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8
----------	----

2018.11.29.(목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임영은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8년 11월 21일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11월 23일

(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임영은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기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기업지원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기업활동 촉진과 지원업무 추진시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성과가 우수한 시군에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기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기업지원 시설 확충시 예산지원 규정 마련
(안 제12조)

- 기업활동 촉진과 지원업무 추진시 성과목표 수립과 성과가 우수한 시군에 대한 포상(안 제20조, 안 제21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산업경제전문위원 : 오문석)

- ‘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기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기업지원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기업활동 촉진과 지원업무 추진시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성과가 우수한 시군에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입지 지원 등) ① 도지사는 기업의 원활한 활동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기업 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기업지원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제4항 중 “행정부지사” 를 “정무부지사” 로 한다.

제20조를 제22조로 하고, 제6장 보칙과 제20조 및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제6장 보칙

제20조(기업지원 성과관리) ① 도지사는 기업 활동 촉진과 지원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성과목표를 수립할 수 있으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·군이 행하는 도의 지원사업 등을 평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21조(포상금의 지급) ①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성과평가가 우수한 시·군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입지지원) 도지사는 산업·농공단지의 원활한 활동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<신설></p>	<p>제12조(입지 지원 등) ① 도지사는 기업의 원활한 활동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도지사는 기업 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기업지원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
<p>제15조(협의회 구성 등) ①~③ (생략)</p> <p>④위원장은 지역경제 업무를 관장하는 <u>행정부지사</u>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안전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	<p>제15조(협의회 구성 등)①~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----- ----- <u>정무부지사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관련법령

■ 지방자치법

제166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·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국가나 시·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67조(국가사무나 시·도사무 처리의 지도·감독)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·도에서는 주무부 장관의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·도지사의, 2차로 주무부 장관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

② 시·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·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·도지사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

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

제18조(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~ ④ 생략

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타시도 이전 및 신·증설 기업 등에 대한 행정지원, 규제개선 및 정주여건 개선 추진사항에 대하여 시군평가로 행정력 강화와 적극적인 시군 참여 유도

2. 비용 발생 요인

- 기업활동 촉진 및 각종 지원사업 등에 대한 시군 성과관리 평가로 우수 시·군 포상금 지급을 위한 비용 발생 예상

3. 관련조문

- 안 제20조(기업지원 성과관리)①도지사는 기업 활동 촉진과 지원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성과목표를 수립할 수 있으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·군이 행하는 도의 지원사업 등을 평가할 수 있다.
②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재정수반요인 : 성과목표 관리 우수 시·군 포상사업비
- 나. 추계의 전제 : 우수 3개시·군 포상사업비 지원 100,000천원
- 다. 추 계 결 과 : 100백만원(최우수 50백만원, 우수 30백만원, 장려 20백만원)
- 라. 재원조달방안 : 2019년 본예산 반영

5. 연도별 비용추계표 : 붙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8년)	2차년도 (2019년)	3차년도 (2020년)	4차년도 (2021년)	5차년도 (2022년)	계
포상사업비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
6. 작성자 :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장 이선호(☎220-3210)